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8. 24 선고 2022가단1341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담당변호사 이대승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3. 7. 13.

판 결 선 고 2023. 8. 24.

주 문

1.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1. 9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E에게,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/6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/6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은 원고로부터, 2006. 5. 22. 미화 일십구만불(후에 증액함), 2007. 4. 4. 200,000,000원, 2008. 4. 11. 200,000,000원, 2008. 4. 7. 200,000,000원을 각 대출받았다.

나. 그 후 E이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, 원고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5532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7. 19. ‘피고(F)는 원고에게 1,573,022,445원 및 그 중 534,934,656원에 대하여는 2012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, 364,536,051원에 대하여는 2012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고 한다)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E의 부친인 G이 2021년경 사망하였는데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,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, D과 E이 있다.

라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고 한다)은 망인의 소유인데, 망인이 사망한 후 2021. 9. 14.경 피고들과 E은 이 사건 주택 중 2/7 지분을 피고 B이, 3/7 지분을 피고 C이, 2/7 지분을 피고 D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2022. 3. 22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명의로 2021. 9. 14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,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/9 소유지분(가액 102,000,000원)과 321,594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H은행, I은행, J은행에 대한 각

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E에 대하여 1,573,022,445원 및 그 중 534,934,656원에 대하여는 2012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, 364,536,051원에 대하여는 2012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,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). 한편,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의 2/9 소유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E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피고들이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그 법률행위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,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피고들이 E의 모친 및 형제, 자매들인 점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이 이 사건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E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,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4/631) 지분,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10/632)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백웅철

별지

부동산 목록

(1동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강동구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동구

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7층 아파트

1층 396.85㎡

2층 398.89㎡

3층 366.52㎡

4층 366.52㎡

5층 366.52㎡

6층 366.52㎡

7층 353.91㎡

지붕층 27.36㎡

옥탑 22.56㎡(인면적 제외)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989.3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26.40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989.3분의 60.12. 끝.

1) 피고 D의 현재 소유지분 $2/7$ - 피고 D의 법정상속분 $2/9 = 4/63$

2) E의 법정상속분 $14/63 - 4/63 = 10/63$